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9
----------	-----

2017. 7. 14. (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7년 6월 26일

다. 회부일자: 2017년 6월 28일

라. 상정일자: 2017년 7월 5일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옥진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진로교육원(2017.9.1.)과 충청북도특수교육원(2017.11.1.)
신설과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능,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조정

나. 주요내용

○ 행정국장 분장사무 신설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직속기관 기능 일부 조정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
교육문화원 업무 조정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

○ 직속기관 신설

-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행정국장 분장 사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 진로교육원 신설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 업무 중 진로지도 교육을
삭제하고 수학·발명·생태환경 교육 추가
- 중앙도서관 업무에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 사항 추가
- 학생외국어교육원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관명칭을
‘국제교육원’으로 변경
- 공립형 대안중학교 변경 설립에 따라 청명학생교육원 관련 조항
삭제
- 2017년 하반기 설립예정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충청북도특수
교육원에 대한 관련 조문 신설 등으로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고, 직속기관 2개 기관 신설과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진로지도, 교육”을 “교육”으로, “과학교육”을 “과학·수학·생태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과학·수학교육”을 “과학·수학·발명·생태환경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수학 및 진로”를 “수학, 발명 및 생태환경”으로 한다.

제1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본문 중 “287”을 “287번길 56”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항로59번길”을 “공항로 59번길”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학력신장, 창의성”을 “창의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어교육원장”을 “국제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 중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한다.

제3장 제8절(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5절(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절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제46조의6(설치) ① 법 제32조 및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에 둔다.

제46조의7(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 진로교육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연수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 보급
6. 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16절(제46조의9부터 제46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절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제46조의9(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진로·직업 교육지원,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를 위하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특수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에 둔다.
제46조의10(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11(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지원
3.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6절(제목 및 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3장제16절(제46조의9부터 제46조의11까지)의 신설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도 진로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5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
충주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7조(행정국) ① ----- -----. 1. ~ 24. (현행과 같음) <u>25.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u>진로지도</u> ,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u>과학교육</u> 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8조(설치) ① ----- ----- -----, ----- <u>교육</u> ----- <u>과학·수학·생태환경교육</u> 의----- ----- -----.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략) <u>4. 학생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 자료 개발·보급</u>	제10조(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6. 과학·수학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7. ~ 9. (생략)

10. 과학, 수학 및 진로 관련 교
원 연수에 관한 사항

11. (생략)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
항을 관장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7조(설치) ① (생략)

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에 둔다. 다
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
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5
9번길 33에 둔다.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
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학력
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

<삭제>

6. 과학·수학·발명·생태환경
교육 -----

7. ~ 9. (현행과 같음)

10. - 수학, 발명 및 생태환경 -

11.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 -----
-----.

1. ~ 6. (현행과 같음)

7.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관
련 연수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287번길 56 --. -----

- 공항로 59번길 -----
-.

제19조(업무) -----
-----.

1. ----- 창의성

협프로그램 기획·운영

2. (생략)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협

4.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5. · 6. (생략)

제6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제문화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북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에 둔다. 다만,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에 둔다.

제24조(원장) ①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평생교육 지원

5. · 6. (현행과 같음)

제6절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 -----

-.---- 국제교육원 -----

-----.

제24조(원장) ① 국제교육원 ----

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생략)

제25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분원) 외국어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업무) 국제교육원장-----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
----- 국제교육원 -----

제25조의2(분원) 국제교육원-----

--.

<삭제>

<삭제>

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 5에 둔다.

제30조(원장)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명학생교육원 기
능수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5절 충청북도진로교육원

제46조의6(설치) ①법 제32조 및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
로교육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
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

<신 설>

<신 설>

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에 둔다.

제46조의7(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 진로교육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연수에 관한 사항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 보급

	6. <u>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8. <u>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u> <u>제16절 충청북도특수교육원</u>
<u><신 설></u>	<u>제46조의9(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 진로·직업 교육지원,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를 위하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특수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에 둔다.</u>
<u><신 설></u>	<u>제46조의10(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신 설></u>	<u>제46조의11(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

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지원

3.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439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8.] [법률 제28013호, 2017.5.8. 일부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